

영등포구의회
제1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12.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9호로 201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255(2010. 9. 1),
서울시 행정과-20684(2010. 9. 1)호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안 반영 요구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 하는 경우 각 동의 통·반장 등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의2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에서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적 자문결과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따른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주민등록의 변경요청을 한 사실을 해당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실비변상) 검토

□ 검토배경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시·군·구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규정(붙임 참조)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11.1.30까지 통보

<참고자료>

1.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붙임)
2. 조례개정안 정부법무공단 검토의견(따로 붙임)

<붙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방문고지 실비변상 관련)

○ 고지·고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시1)

현 행	개정안
제 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③ (생략) ④ <신설>	제 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제 항에 따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

○ 고지·고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예시2)

현 행	개정안
제 조(실비변상) <신설>	제 조(실비변상) <u>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